

[별지 제0호 서식] <개정 2017. 9. 5., 2019. 12. 13., 2020. 9. 4., 2021. 8. 31., 2022. 2. 9.>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피보험자·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(근로자용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 7일				
사업장관리번호									
사업장	사업장명				전화번호				
	소재지				FAX번호				
보험구분	성명	생년월일	성별	외국인 여부	정정 내용				
					정정부호	정정 전	정정 후	변경일	정정사유
☐ 고용 ☐ 산재			☐ 남 ☐ 여	☐					
☐ 고용 ☐ 산재			☐ 남 ☐ 여	☐					
☐ 고용 ☐ 산재			☐ 남 ☐ 여	☐					
☐ 고용 ☐ 산재			☐ 남 ☐ 여	☐					
☐ 고용 ☐ 산재			☐ 남 ☐ 여	☐					

제출서류 ▶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급여계좌이체내역, 출근부 등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

작성방법

[보험구분]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√표시(고용·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√표시)

[정정부호]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

공 통	[03]취득일(고용일) [04]상실일(고용종료일) [05]전근일(전보일) [06]휴직시작일 [08]휴직사유 [09]보험료 부과구분
고용보험	[32]상실사유 [37]주소정근로시간 [38]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

[변경일] 노조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(일반근로자↔노조전임자 상호신분변동)시에만 기재

[정정사유]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

유의사항

1.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『고용보험법』 제118조 및 『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, 휴직종료일의 변경은 「피보험자·근로자 내용 변경신고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자격상실(고용종료) 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는 경우 별도 서식인 「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」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4. 국민연금,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.

신청인(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) :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(지사장) 귀하